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고

의안 번호	4360
----------	------

2025. 10. 17.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 9. 30. 광양시장
- 나. 회부 일자: 2025. 9. 30. 회부
- 다. 상정 일자: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2025. 10. 17.) 상정,
“원안의결”

2. 제안 요지

가. 제안 이유

- 상위법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체계 및 용어 정비
-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과 실질적인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세부 조항 구체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전면 개정

나. 주요 내용

- 상위법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안 제2조)
- 연도별 시행 계획 조항 신설 (안 제4조)
- 독서 문화 진흥 사업 구체화 및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 권장 도서 보급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문장 어법 및 용어 개선, 띄어쓰기 등 정비 사항 반영

3. 검토 의견

가. 주요 변경 내용

조항	항 목	현행 조례	전부개정안
제1조	조례 목적	상위법 조항 표기	「제3조」 문구 삭제(조항 간결화)
제2조	정의 조항	학교 정의 포함	조항 전체 삭제·수정(조항 단순화)
제4조	계획 수립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으로 변경
제5조	독서 진흥사업	참여자 보상 간접 언급	진흥사업 구체화 참여자 보상 지원 근거 명확화
제7조	권장도서 보급	한 책 읽기, 북스타트	「생애 첫 책」 등 신규사업 추가
제8조	관계기관 협력	협력 필요성 명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명시, 협력체계 확장
제9조	포상 및 표창	공적자 표창 명시	표창 외 장학금 지급 근거 추가, 포상 확대
기타	문장 어법, 용어개선 및 띄어쓰기 등 조례문 전반 정비		

나. 검토 결과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독서 문화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독서 환경 개선에 따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 상위 법령 및 조례안의 내용과 조문 체계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

4. 질의 및 답변 요지: 회의록 참조.

5. 심사 결과: 원안의결(출석위원 6명)

6. 소수의견의 요지: 해당 없음.

붙임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책축제, 독서 경진대회, 강연, 공연, 체험 등 독서 관련 행사
4.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독서 활동 지원
6.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7.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 기념품, 상품권,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제적·수증·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

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시장은 시민의 독서 역량 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시민 한 책 읽기 사업
2. 독서문화 진흥 사업(생애 첫 책, 북스타트 등)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부개정안)

광양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 계획)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 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

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환경 개선 및 독서 자료의 확보
2.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책축제, 독서 경진대회, 강연, 공연, 체험 등 독서 관련 행사
4.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5.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독서 활동 지원
6.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기념행사
7.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
8.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을 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 기념품, 상품권, 물품 등
2. 도서관의 폐기·제적·수증·부록자료 및 지난 연도 간행물 등 도서관 장서로 등록 및 관리가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자료

제6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7조(권장도서 보급 지원) 시장은 시민의 독서 역량 함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고, 권장도서를 선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시민 한 책 읽기 사업
2. 독서문화 진흥 사업(생애 첫 책, 북스타트 등)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광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